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한화/기계(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 및 개별계약(이하 “이하 본건 관련계약”) 등과 관련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제1조에 따른 본건 관련계약 등의 이행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일방 당사자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제공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인쇄물이나 컴퓨터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열람 허용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 및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수령자가 제공자로부터 지득하게 된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스펙, 데이터, 공식,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건 관련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및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하에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건 관련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일체 및 업무상 비밀 등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 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중도해지 포함)에도 마찬가지 이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회사 내 목적상 부합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각서를 징구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 ③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하에 본건 관련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3자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며, 해당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제3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서면 승인한 정보
3.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파기 및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그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서면합의로 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각 개별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각각 5년간 유효하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도급인

업 체 명 (주)한화/기계

주 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대표이사 옥경석

수급인

업 체 명

주 소

대표(이사)